

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조교장학금 및 생활비 지급지침

2005.03.01 제정 2011.05.31 개정
 2005.09.01 개정 2011.12.13 개정
 2009.02.02 개정 2012.07.09 개정
 2009.10.10 개정 2012.10.09 개정
 2010.12.07 개정 2013.11.26 개정
 2011.03.02 개정 2016.07.01 개정
 2018.05.01 개정 2020.02.01 개정
 2021.09.01 개정 **2022.09.01 개정**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우수한 대학원생을 유치하고 재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학원 경영학과 및 국제경영학과의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법령 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개인 및 교외 장학기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 3 조 (조교장학금 지급 기간) 조교장학금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박사과정: **최대 10 회**까지 지급 할 수 있다.

단, 본교 석사과정 출신 박사과정 학생은 석사과정 시 조교장학금을 수혜한 기간을 총 지급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석박사통합과정: **최대 12 회**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석사과정: **최대 4 회**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 4 조 (조교장학금 신청자격 및 선정)

① 경영학과 및 국제경영학과에 Full-Time 으로 박사/석박사통합/석사과정에 있는 재학생 및 수료연구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Full-Time 학생이라 함은 직장을 갖지 않거나 직장이 있더라도 휴직상태에 있어야 하며, 그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아야 한다.

1. 조교신청서 및 근무수행약정서를 제출한 학생

2. 장학금 신청 직전학기 성적이 3.5 이상이거나 누적평균 3.5 이상인 학생

단, 3.5에 미달하는 경우, 1회차는 경고조치, 2회차는 50% 조교임용, 3회차 이상은 0% 조교임용의 벌칙을 부과한다.

3. Full-Time 학생 중 **직전학기 및 해당학기 최소 8 학점 (3 과목) 이상**을 취득한 학생

단, 2학기 이상 마친 Full-Time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예외로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ㄱ. 수료요구학점이 8 학점 이하로 남아 수료요구학점 전체를 수강하는 것을 증명한 경우

ㄴ. 전공 교과과정 개설 상의 필요(개인적인 사정은 제외)로 인해 학생이 8 학점 이하를 신청하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공주임교수가 사전 허락한 경우

4. 첫 학기를 제외한 재학생 및 수료생의 경우 근무수행 담당교수의 추천서를 받은 학생

5. (장학금반환) 본인에 사정에 의해 임기 중에 해임을 원할 때에는 이미 수령한 장학금을 잔여임기 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 수혜자는 대학원 학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대학원장이 정한다.

③ 학업성적 불량, 조교 근무 태도 불성실 등의 사유로 전공주임교수가 조교장학금 배정에서 제외할 것을 학과주임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학과주임은 해당 학생의 소명을 들은 후 대학원 학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학원 학과관리위원회에서 제외여부를 결정한다.

제 5 조 (장학금 종류 및 생활비 지급 기준)

① Full-Time 박사과정 (재학) 장학금(Full Scholarship): **수업료 전액과 생활비.**

수혜자는 주당 20 시간에 준하는 연구조교 또는 교육조교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Full-Time 박사과정 (수료연구 재학) 장학금: **생활비.**

주당 20 시간에 준하는 근무를 수행하는 연구조교 또는 교육조교로서 조교임용 지침에서 정한 박사과정 임기(4 회) 외에 **최대 6 회**, 석박사통합과정 임기(8 회) 외에 **최대 4 회**까지 지급한다.

- ③ 생활비는 아래 조항에 따라 지급한다.
- 직전 학기 평균 평점 3.5 이상 또는 누적평균 3.5 이상 : 소정의 생활비를 지급하며 그 액수는 대학원 학과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학업성적 불량, 조교 근무태도 불성실 등의 사유로 전공주임교수가 조교 장학금 배정에서 제외할 것을 부원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부원장은 해당 학생의 소명을 들은 후 대학원 학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학원 학과관리위원회에서 제외여부를 결정한다.
 - 박사과정은 입학한 학기로부터 10 회까지, 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한 학기로부터 12 회까지 지급한다. (수료 여부와 상관없으며 휴학 학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박사 과정 9,10 회/석박사통합 과정 11,12 회에 대해서는 BK 석사 생활비 규정에 따른다.)
- ④ Full-Time 석사과정 (재학) 장학금(Full Scholarship): 수업료 전액.
수혜자는 주당 20 시간에 준하는 근로를 수행하는 연구조교 또는 교육조교여야 한다.
- ⑤ 대단위강의 조교장학금: 수강인원 100 명 이상의 강의를 지원하는 교육조교는 대학원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 ⑥ 이 외의 사항은 고려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을 따른다.

제 6 조 (조교장학금 배정순위)

- ① 경영대학(원)의 장학금 배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순위: Full-Time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포함) 및 박사 수료연구 재학생
 2. 2 순위: Full-Time 석사과정
 3. 3 순위: 대학원 학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석박사과정

제 7 조 (조교장학금 및 생활비 재원) 장학금 재원은 1 차적으로 매 학기 대학원에서 배정하는 연구조교 장학금 및 교육조교 장학금으로 충당한다. 그 외(생활비 포함)에는 경영대학(원) 자체장학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8 조 (조교장학금 및 생활비 지급 시기) 매학기 휴·복학 및 최종등록 마감 후 1 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생활비는 매월 말에 지급한다.

제 9 조 (기 타)

- ① 본인이 소득이 있거나 외부기관 장학금 또는 그 이외의 학비 보조를 받는 경우, Full-time 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②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석박사통합과정 중도 포기 및 탈락할 경우 생활비 지급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 ③ 이 내규에 정해진 이외의 사항은 법령과 본교의 장학금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대학원 학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 10 조 (박사과정 연구실 배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포함) Full-Time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연구실을 배정한다.

- ① 연구실배정은 보장된 것이 아니며, 가용한 연구실 공간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 ② 박사과정은 입학년도로부터 5 년까지 연구실을 배정한다. 단, 위 기한 이후에 연구조교로 선발될 경우, 여석이 있을 시에만 배정한다.
- ③ 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년도로부터 6 년까지 연구실을 배정한다. 단, 석박통합과정 진입자의 경우 진입한 학기부터 5 년까지 배정한다. 단, 위 기한 이후에 연구조교로 선발될 경우, 여석이 있을 시에만 배정한다.
- ④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연구실 배정 기간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휴학과는 상관없이 적용된다.
- ⑤ 휴학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구실을 배정하지 않는다.
- ⑥ 석사는 연구조교일 경우 공간이 허락될 경우에만 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년 9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년 2 월 2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년 3 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년 12 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년 2 학기 조교장학금 및 생활비 결정 시부터 개정시행한다.
단, 제 10 조 3 항의 단서조항은 2011 년 1 학기 석박통합과정 진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년 7 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8.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 4 조 ①-2 단서조항은 2014년 3월부터 적용한다.

부 칙

9.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가.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나. 이 지급규정 개정(안)을 지침(안)으로 변경한다.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생활비 지급원칙

과정	내규	지급기간	비고
박사	Full-Time으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며 교육조교의 경우 주 20시간에 준하는 근로를 제공한 학생	입학한 학기부터 10 회까지 지급	휴학학기는 포함하지 않음
석박통합	상동	입학한 학기부터 12 회까지 지급	석박통합 중도 진입자는 통합과정에 진입한 학기로부터 8 회까지 지급, 휴학학기는 포함하지 않음.

[별표 2]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연구실 배정원칙

과정	원칙	배정기간	비고
박사	Full-Time 만 배정	입학한 연도로부터 5 년까지 단, 위 기한 이후에 연구조교로 선발될 경우, 여석이 있을 시에만 배정한다.	석박통합 중도 진입자는 통합과정에 진입한 연도로부터 5 년까지 배정 연구실 배정기간에 휴학기간도 포함
석박통합	Full-Time 만 배정	입학한 연도로부터 6 년까지 단, 위 기한 이후에 연구조교로 선발될 경우, 여석이 있을 시에만 배정한다.	
석사	연구조교일 경우만 배정 (단, 초빙교수 연구조교도 배정)	연구조교 근무기간만 배정	박사, 석박통합 과정에 우선 배정 후 공간이 남을 경우에만 배정